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40호 2018. 01. 11.(목)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51호 공장설립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2
- 사천시 공고 제6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5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7 / FAX 831-6012

# 사 천 시 공 보

제540호(2)

##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8-51호

### 공장설립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21조(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사전통지서(청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9일

## 사 천 시 장

1. 공고 제목: 공장설립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8. 1. 9.~2018. 1. 24. (15일간)
3. 당사자: 성보산업 대표 오\*선(경남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산 6-11번지)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3년이 지난날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공장설립승인 취소 처분

6.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1호 및 제4호

# 사 천 시 공 보

제540호(3)

## 7. 청문사항

- 청문일시: 2018. 2. 5.(월) 15:00~16:00
- 청문장소: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8층 소회의실
- 주재자: 우주항공국 산단관리과 산단지원팀 박용국
- 청문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문의처: 사천시청 산단관리과 (☎055-831-3456)

## 8.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붙임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 법 제35조(청문의 종결)에 따라 청문이 종결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사 천 시 공 보

제540호(4)

## <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 천 시 공 보

제540호(5)

##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8-67호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 1. 11.

##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8. 1. 11. ~ 2018. 1. 26.(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06우1704	K5	이*호	2018. 1. 9.	소유자요청(불명자 운행)

####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0호(6)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055-831-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